

의안번호	제 호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 연월일	2023. 7. 4.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7. 4.

제 출 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 개정(법률 제19305호, 2023. 3. 28. 공포·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서식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신설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3조, 제4조)
-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부과대상 정비(안 제3조)
- 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별표)
- 라. 조례 개정시(2018. 9. 27.) 삭제되어 관련 조항이 없는 서식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역보건법」 제34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특이사항 없음 [복지지원과-22566(2023.6.8.)]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3-7호

가) 예고기간: 2023. 6. 1. ~ 2023. 6. 2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3.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제4조 중 “법 제34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보건법</u>」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u>지역보건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u>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u></p> <p>2. 법 제29조에 위반하여 유사 <u>명칭을 사용한 자</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4조(부과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제1조(목적) ----- 「<u>지역보건법</u>」 제34조제3항----- ----- -----.</p> <p>제3조(부과대상) ----- ----- -----.</p> <p>1. ----- ----- ----- <u>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u> ----- --</p> <p>2. <u>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u></p> <p>3. <u>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u></p> <p>제4조(부과 기준) 법 제34조제1항 <u>및 제2항</u>----- -----.</p>

[별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 라.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마.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지 아니 한다.
- 바. 과태료의 부과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부과금액 (단위: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		100	200	300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		100	200	300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100	200	300

[별표] <개정 2000. 00. 00.>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 라.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마.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의 부과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부과금액 (단위: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	100	200	300
2.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통지)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소재지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주소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고 성 군 수 인

뒷면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삭제 <개정 2000. 00. 00.>

[별지 제2호서식] 삭제 <개정 2000. 00. 00.>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역보건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현황	명 칭		종별	
	개설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위반행위	일 시			
	내 용			
처분내용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별지 제3호서식] 삭제 <개정 2000. 00. 00.>

과태료 납부 독촉장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납부 독촉

납 부 의 무 자	개설자		주민등록번호	
	명 칭		소 재 지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기일		
<p>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고 성 군 수 인</p>				

[별지 제4호서식] 삭제 <개정 2000. 00. 00.>

제 호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취소(변경) 내 역	당초지급액	취소(변경)금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불 임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 고 성 군 수 인 </div>				

[별지 제5호서식] 삭제 <개정 2000. 00. 00.>

[별지 제6호서식] 삭제 <개정 2000. 00. 00.>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

발 신 : 고 성 군 수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 제26조제4항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 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으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부과기준		이의제기일자	

- 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원본 1부.

[별지 제7호서식] 삭제 <개정 2000. 00. 00.>

[별지 제8호서식] 삭제 <개정 2000. 00. 00.>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언적 권고적 내용에 따라 재정 수반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작성을 생략함.

작성자: 보건행정과장 조 석 래

□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제22조(정보의 파기)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